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19 _ 2014년 12월

이 사람의 향기 |

진군은 계속된다 —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모범, 웹와치 사업단 탐방

포커스 |

2014년 17개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현황

2014년 조례법률 모니터링사업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 방향

칼럼 |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 2014년 세계 장애인의 날 유엔본부 이벤트



차량용 이동식 화장실 차량 전경(충남 서산시), 맨우측 지면에 내려와 있는 화장실이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좌측 사진)/ 내부전경(우측 사진)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자체가 야외 행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지체 장애인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동용 화장실이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전날 저녁부터 물도 먹지 않고 다음날 행사에 참여하기 다반사다. 위 사진은 서산시청이 마련한 차량용 이동식 화장실 차량의 전경과 내부 모습이다. “이 차량은 각종 야외 행사장 및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충남 서산 용현계곡 등 피서객을 위하여 찾아오는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차량에는 냉난방 동과방지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어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¹⁾ 다만 장애인용 화장실은 단 하나뿐이어서(양변기1, 세면기 1) 남녀 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옥의 티!

1) 인용부분 온라인 사이트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P99&artid=7891397&categoryid=435308®dt=20090728151235

CONTENTS

	이미지 단상	이동식 화장실 설치!
02	편집자 편지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바랍니다.
04	칼럼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 2014년 세계 장애인의 날 유엔본부 이벤트
06	의정돌보기	발상의 전환으로,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
08	이 사람의 향기	진군은 계속된다 —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모범, 웹와치 사업단
16	포커스 01	2014년 17개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현황
22	포커스 02	2014년 조례법률 모니터링사업 결과
28	포커스 0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발전 방향
32	씨네평론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34	서평	인류생존 가능성의 실험장 —『제노사이드(Genocide)』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바랍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2014년 올해는 많은 국민이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한해를 보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충격과 슬픔, 분노에 대한 속 시원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안전불감증’을 고발하였고 우리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문제의 지적은 오히려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적인 문제의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감을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철저한 직업의식,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의식, 치밀하고 책임성있는 정부당국의 조치,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가로막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안전불감증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효율성과 경제성, 생명에 우선하는 이익,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우선하는 경쟁의 가치들이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선과 같은 방식의 해결은 오히려 이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이 반성하고 인식이 변하면 모두 해결될 것같은 접근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버린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스스로의 목숨을 내려놓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그저 슬픈 사연에 안타까움만 가질 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공감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재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참사의 슬픔과 분노에서 얻은 작은 희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의 기회가 단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다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성찰과 실천이 새해를 정말 새해를 만들 수 있는지는 다시 일년 후 오늘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함께 바라봅니다.

2014년 12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이석구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 2014년 세계 장애인의 날 유엔본부 이벤트

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지난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 2014년은 UN에서 많은 나라들이 설정한 국제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평가하고 2015년 후에 진행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이슈를 포괄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연합본부(UN Headquarters)에서는 12월 2일~3일 이틀간 2014 세계 장애인의 날 이벤트를 거행했다. 토론회와 기자회견, 장애인영화제 등 거창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내용이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행사 내내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되며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특히 다니엘라 베사 등이 이사로 있는 UN DESA(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 경제사회국)에서 행사를 주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세션 주제는 3일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장애를 포괄한 지속가능한 개발(Disability-inclusive Sustainable Development)” 였고 그 부제는 기술의 약속(The promise of technology)이었다. 이는 새로 설정되는 개발목표 중에 장애이슈를 다양한 분야에 포함시키지는 논의이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데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미래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접근성의 구축을 완비하는데 새 목표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몇 년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그룹에서 논의되어왔고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매우 관심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 제안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세가지 차원, 즉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의해 작동한다. 그 목표 중 장애이슈는 SDGs로 제안된 다양한 부분에 포괄하여 작동한다. 구체적인 개발목표로 교육과 불평등, 성장과 고용, 주거지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에 관련 목표까지 모든 분야(cross cutting)에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SDGs는 장애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인과 모든 시민들이 목표달성과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사회개발에 의해 보조기술, 접근가능한 정보통신기술 기술 개조 및 기타 정책과 프로그램적 조치를 홍보하여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영향을 끼칠 것이다.



UN 본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토론회(장애를 포괄한 지속가능한 개발 - 기술의 약속) 전경



UN Accessibility Centre에 전시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러한 기술에 대한 기대는 장미빛 환상처럼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설레이는 희망을 갖게 한다. UN 본부 1층에 있는 접근성 센터(Accessibility Centre)는 기술에 대한 기대와 약속을 가시화하고 있는 증거같아 보였다. 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에게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장애인은 보조공학 등 특수한 기술에 힘입어 사회에서 자립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행복 추구의 충분조건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들이 아직 어느 사회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야말로 모든 분야(cross cutting)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목표를 잡는 것이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1) Accessibility Centre가 자랑하고 있는 ICT기술의 상징인 접근성 보조기기가 한국의 정보화진흥원에서 제작하고 보급하는 시청각 및 지체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전시공간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한국의 ICT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과 이용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콜택시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콜택시 법적의무대수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한 곳이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8월 장애인바우처 콜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개인택시 1천290대와 계약을 맺고 본격 시행되고 있다. 특수차량이 필요 없는 장애인 수요를 기존 콜택시가 부담하게 되면서 '두리발'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장애인바우처 콜택시는 일반 콜택시와 이용 방법은 동일하지만 요금의 65%를 시가 부담한다. 2013년 9월 기준 1일 평균 이용수가 950여 건으로, 100대가 운영 중인 두리발이 평균 648건인 것을 감안하면 특수차량 구입 없이 두리발 이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콜센터 운영비 등 연간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두리발에 비해 올해 장애인바우처 콜택시에 책정된 예산은 13억 6천만원 수준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의 두리발 이용 승객을 '휠체어 사용자'와 '휠체어 비사용자'로 나누어보면 후자의 비중이 51%에 달했다. 장애인바우처 콜택시가 본격 가동되면서 9월 두리발의 휠체어 비사용자 비중은 25%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특수차량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두리발 이용 기회가 더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부산일보, 2013/10/10)

소개된 의회 회의록은 장애인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이경혜 의원의 발언이다. 이 의원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남았지만 발상의 전환만 있다면 장애인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2013년 12월 09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발언 중

이경혜 위원

제가 제안했던 정책인데, 우리 교통약자의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로 우리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제도를 적극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전국 최초의 제도라서 사실 시행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교통국장 정태룡

예. 평소 위원님이 교통약자에 대한 의지와 생각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도 잘해서 앞으로 크게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성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8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난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영업용 콜택시 1,290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 6개월 만에 하루에 이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이용 건수가 지금 950건이 넘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두리발 있지 않습니까? 두리발 134대를 증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34대가 아니고 134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두리발이 부족해서 늘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지원에 대한 요구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질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발달장애인 다 이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의 영업용 택시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량 구입비가 없겠지요? 거기다가 다른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오로지 서비스 지원에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해 13억 8,000만 원으로 8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두리발 운영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일반 택시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일반택시 업체가 활성화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세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둘 하나로 몇 마리의 새를 잡았습니까? 일석오조!

1) 장애인콜택시는 지역마다 칭하는 명칭이 다른데, 부산광역시에서는 '두리발'로 불린다.

진군은 계속된다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모범, 웹와치 사업단

인터뷰 · 정리 김의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2013년 신한은행 모바일 웹 접근성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웹와치(주) 이범재 대표이사(오른쪽)

이번 소식지 인터뷰는 장애인 IT사회적기업 웹와치(Webwatch) 탐방이다. 기업명에 붙은 수식어가 이 기업의 속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중심이라는 인적 구성상의 특성, 그리고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가치지향성이 그것이다. 장기불황에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부담일텐데, 장애인 고용 비율도 고려해야하니 얼핏 보면 제한조건이 많은 힘겨운 게임인 듯 싶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동한 웹와치가 창업 6주년을 맞았다. 웹와치의 성장과 좌절,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웹와치(주) 이범재 대표이사님을 만나보았다.

Q 인터뷰 수락해서서 감사드립니다. 한 마디로 말해 웹와치 주식회사(이하 '웹와치')가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웹와치는 원래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그 누구라도 큰 불편함 없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주요 민간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웹 접근성'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IT사회적 기업입니다. 또 SI(시스템개발) 업체들이 정해진 기준이나 실제 사용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컨설팅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전문 컨설팅/감리/인증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4년 웹 접근성 인증이 민간인증에서 국가인증으로 바뀌면서 인증과 컨설팅을 동시에 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정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업무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웹와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웹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 등 '정보화 약자들의 평등한 웹사용권을 보장' 한다는 것과 이 과정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회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주체로서 이 사회 안에서 자립한다는 점입니다. 웹접근성은 그런 면에서 아주 작은 영역이겠지만요.

Q 예 그렇군요.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고용하고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업무 자체에 사회적 가치 추구가 담겨 있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수렴된다는 점이라는 거, 우문현답이네요(^^). 흔히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로 불리는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 1955□)는 웹의 보편성을 언급하면서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웹의 필수요소"라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장애인들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웹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웹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기를 통해 웹에 접속하여 무언가 입력하고 조작(클릭)을 통해 정보를 듣고 본다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일반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예 이용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접근성이 없는 웹 사이트를 이용하려 하면 그것은 불편한 정도를 넘어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웹이란 것은 보는 정보가 99%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리더(페이지의 정보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웹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때,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지 않은 웹 사이트는 이미지의 대체텍스트가 없어 어떤 버튼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인식할 수 없고 조작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있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선 스크린리더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대체텍스트 입력과 같은 적절한 설명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아, 시각장애인들의 웹접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겠군요. 장애인 권리는 당사자 시각으로 접근해야 보이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계신데요. 시각장애도 장애등급에 따라 웹접근에 차이가 날 듯 합니다. 약사에서 중증의 저시력에 이르기까지 손상차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의 손상 정도에 따른 차이보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보통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확대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공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때문에 시력 차이에 따른 정보 습득이나 업무 처리의 속도 차이는 있으나 화면을 볼 수 없어 스크린리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만큼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색약, 색맹의 증상이 저시력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Q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모르는 분야는 세부적인 면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품질마크'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품질인증 마크로 생각되는데, 웹와치는 WA마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인증하는 품질마크가 있듯이 민간에서 인증하는 인증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

와치의 WA마크는 웹접근성에 대해 민간에서, 그것도 주요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스스로 인증의 주체가 되어야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어진 민간 접근성 인증마크입니다. 웹와치의 전신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모니터링팀에서는 이미 2007년에 이 WA마크를 제정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사이트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해 왔습니다.

접근성마크는 크게 웹 제작의 기초인 언어와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전문가 평가와 그렇게 제작된 웹이 실제로 장애인 등의 사용자가 쓰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용자 평가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접근성 마크는 매 1년 단위로 부여되고 갱신을 위해서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심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물 같은 물리적 실체에 비해서 웹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매우 자주 보수되고 기능이 첨가되고 업그레이드 되곤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갱신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웹와치가 대한민국 정보 접근성의 대표기관이라 자부하실 수 있다면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가장 먼저 접근성마크-WA 마크를 제정하고 부여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구요,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의 접근성 마크를 부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7-8년간의 노력을 통해 웹접근성과 관련한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회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애인 웹접근성 심사 인력들은 저희 회사가 정보접근과 관련한 대표적 기관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모바일과 소프트웨어 접근성 분야도 개척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웹이라는 가상공간만이 아니라 모든 물리적 공간들, 모든 사물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영역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의 공간과 기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접근성이라는 길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공간을 다루는 기체가 PC에서 급격하게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또 어떤 방식의 기체가 등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화 기기가 된 반면에 항상 법과 제도는 시간차를 두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와 같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수습을 하기 전에 민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해야 합니다. 저희는 웹접근성과 같이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공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모바일접근성에 대한 적절한 인증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한 연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실제로 모바일을 만드는 IT 기업들과의 기술적 협력 등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Q 장애인 정보접근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관만 하더라도 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¹⁾ 지속적인 정비도 취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웹접근성의 꾸준한 관리점검에서 웹와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경험을 고려할 때, 법제도에서 개선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선진화랄까 혹은 인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구도 길거리에 단차를 없애고 휠체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그를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잘 보이지 않으니 가상 공간과 모바일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겪게 되는 장애를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공감감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더 비용도 적고 쉬운 일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상당수의 공공부문, 금융이나 보험과 같은 민간 필수영역들, 문화와 관련한 일정 부문, 안전과 관련한 홈페이지나 모바일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증마크를 획득하도록 하는 의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규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들이 접근성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데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웹이나 모바일을 만들고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의 일부라도 제공되면 더 많은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Q 듣고 보니, 실제로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인지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을 알리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겠습니다. 근래 웹와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조직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도 질과 양 측면에서 보다 확대될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지만, 웹와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편입할 만한 의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웹와치의 의미는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단지 고용되었다는 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 장애인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업화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럴 경우에 장애인의 참여=노동은 훨씬 주체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고급화될 가능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1) 『2010 웹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인권포럼), p.17에 따르면 웹접근성 수준 판정결과 등급 A~F중 전국 광역지자체 11곳이 C등급(보통), 5개 지자체가 D등급(우려)으로 확인돼 단 한곳도 우수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여행을 장애인들이 기획해 본다든지, 장애인의 취업교육 가운데 일부를 장애인이 가르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장애인들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웹와치 2014년 하반기 워크샵 단체 사진

Q 예, 장애인의 참여와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표란 말씀갈데요. 끝으로 이범재 대표이사님이 웹와치를 경영하면서 갖게 되는 사회적 가치의 철학적 함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장애인도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자유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 누구나 취업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처럼 또한 성장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자 원하고 더 높은 책임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모든 장애인이 다 그런 성취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취를 장애를 이유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쉽게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은 장애와 관련한 사회복지/문화/행정/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영역에서라면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단순한 수혜자나 이용자를 넘어서는 주체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작은 영역에서의 주체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더 전면적이고 더 보편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Q 답변을 듣다보니 전체적으로 우문현답의 퍼레이드가 된 거 같습니다(웃음).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웹와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7개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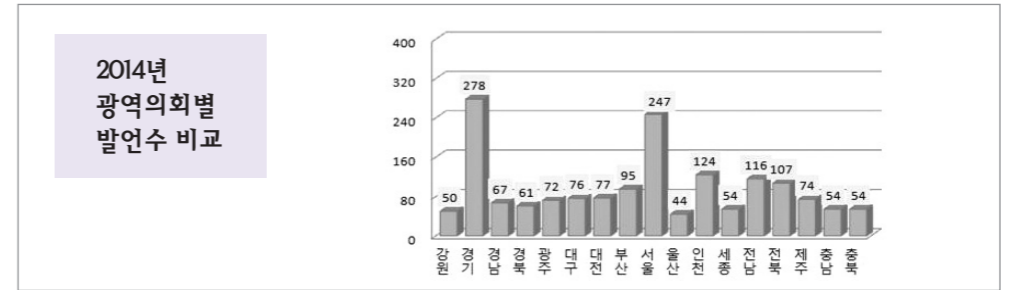


김애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10년 7월에 구성된 민선5기 지방의회의 막이 오른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6기 지방의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14년 민선5기 4차년도 광역의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기대 속에 출발했던 민선5기의 마지막 임기는 어떠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민선5기 4차년도 광역의회 모니터링은 2013년 7월 01일부터 2014년 06월 31일까지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에서 정한 장애인관련 발언은 ‘한 회의에서,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한 의원이, 한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 단원들이 회의록을 전수조사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장애인정책발언은 3명의 평가위원들이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5가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덧붙여 발언을 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지시 등 4가지 발언성격으로 분류했다.

<그림1> 민선5기 4차년도 17개 광역의회별 발언수 비교



발언통계(발언수와 회의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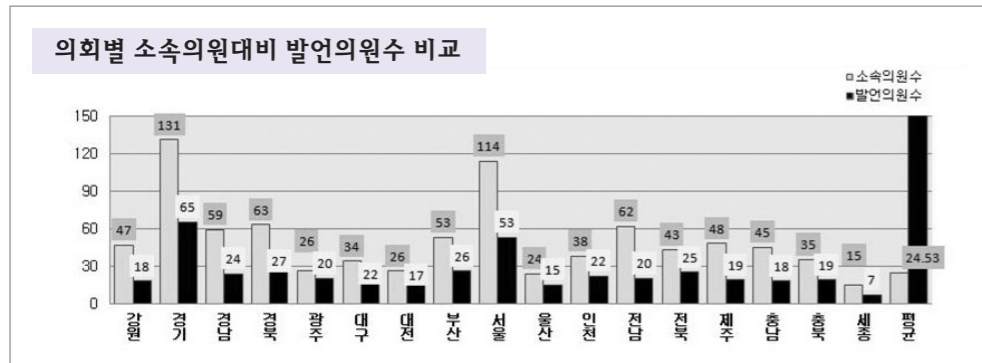
<표1> 민선5기 4차년도 광역의회 지역별 발언 관련 통계(의원별/회의별)

지역명	정책 발언수	소속 의원수	발언 의원수	소속의원 발언율 (%)	소속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	발언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	전체 회의록수	발언발생 회의록수	발언발생 빈도(%)	전체 회의록당 발언수	발언발생 회의록당 발언수
강원	50	47	18	38.30	1.06	2.78	211	25	11.85	0.24	2.00
경기	278	131	65	49.62	2.12	4.28	346	98	28.32	0.80	2.84
경남	67	59	24	40.68	1.14	2.79	173	48	27.75	0.39	1.40
경북	61	63	27	42.86	0.97	2.26	192	35	18.23	0.32	1.74
광주	72	26	20	76.92	2.77	3.60	148	33	22.30	0.49	2.18
대구	76	34	22	64.71	2.24	3.45	210	69	32.86	0.36	1.10
대전	77	26	17	65.38	2.96	4.53	162	51	31.48	0.48	1.51
부산	95	53	26	49.06	1.79	3.65	265	50	18.87	0.36	1.90
서울	247	114	53	46.49	2.17	4.66	379	90	23.75	0.65	2.74
울산	44	24	15	62.50	1.83	2.93	203	23	11.33	0.22	1.91
인천	124	38	22	57.89	3.26	5.64	214	54	0.00	0.58	2.30
전남	54	62	20	32.26	0.87	2.70	173	20	11.56	0.31	2.70
전북	116	43	25	58.14	2.70	4.64	183	63	34.43	0.63	1.84
제주	107	48	19	39.58	2.23	5.63	196	50	25.51	0.55	2.14
충남	74	45	18	40.00	1.64	4.11	200	52	26.00	0.37	1.42
충북	54	35	19	54.29	1.54	2.84	173	30	17.34	0.31	1.80
세종	54	15	7	46.67	3.60	7.71	114	18	15.79	0.47	3.00
합계	1,650	863	417	557	1.91	3.96	2,735	557	20.37	0.60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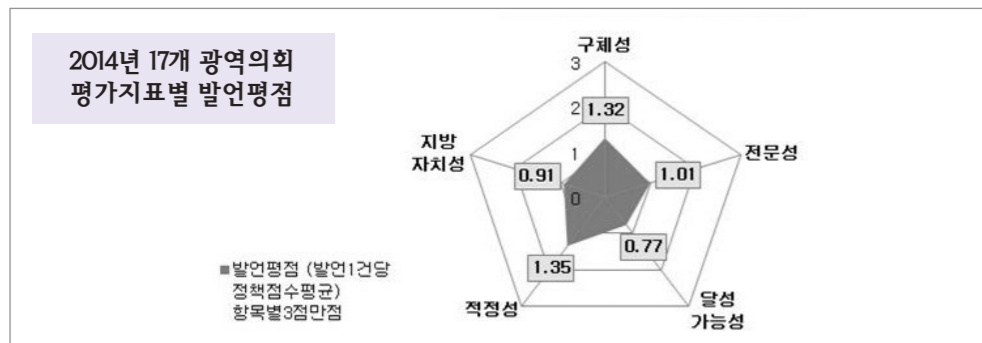
〈표1〉에서 보듯이, 민선5기 4차년도 광역의회의 장애인정책 발언 수는 경기(278건), 서울(247건), 인천(124건) 순으로 많았고, 울산(44건), 강원(50건), 전남과 충북, 세종(각 54건) 순으로 적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광역의회의 연평균 장애인 관련 발언은 97.0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민선4기 평균 97.1건과 비슷한 수치로, 임기 마지막임을 감안하더라도 민선5기 1차년의 평균 142.7건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이다.

민선5기 4차년 전체 회의록 수는 3,542개로 이 중 809개(발언발생 빈도 22.84%)의 회의록에서 장애인 관련 발언이 나왔다. 또한 모니터링대상 회의록 수는 총 3,542건으로, 민선4기 평균보다 30여건 정도 회의록 수가 많았다. 회의록수가 증가하여 발언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회의록당 발언수와 발언발생회의록당 발언수가 민선4기 광역평균 보다 민선5기 4차년도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의가 증가한 것과 상관없이 민선5기 4차년도의 발언 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민선4기 광역의회에 비해 민선5기 광역의회에서의 양적 수치는 증가했다. 그러나 민선5기 4년간의 의정활동 중에는 4차년의 발언수가 가장 적게 발생했다.

〈그림2〉 민선5기 4차년도 17개 광역의회별 소속의원대비 발언의원수 비교



〈그림3〉 민선5기 4차년도 17개 광역의회 평가지표별 발언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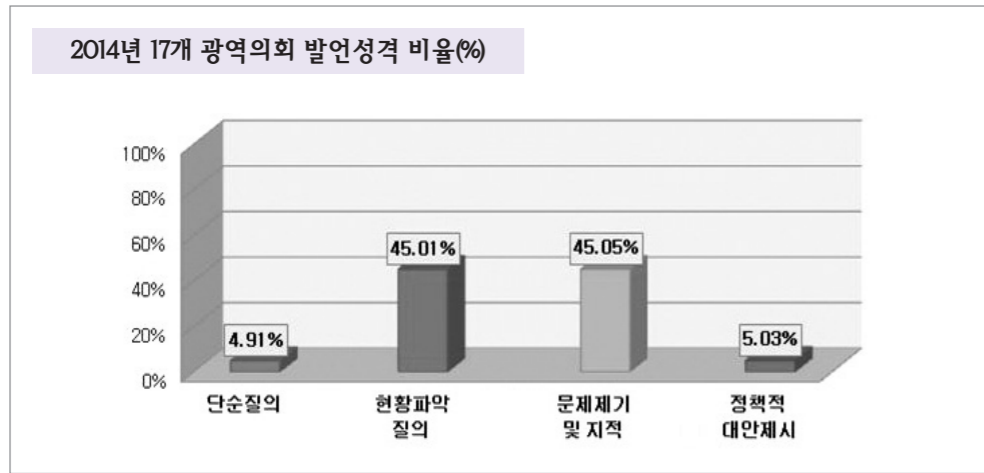
〈표2〉는 장애인정책발언을 5가지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것을, 광역의회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지표는 3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구체성' 과 '적정성' 이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달성가능성' 과 '지방자치성' 은 1점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를 통해 의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현안을 다루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발언들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 민선5기 4차년도 광역의회 지표별 발언평점 현황

지역명	정책 발언수	지표별 발언평점(발언1건당 평균점수)					계 (15점)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강원	50	1.26	1.03	0.85	1.53	0.93	5.60
경기	278	1.23	0.85	0.73	1.24	0.85	4.89
경남	67	1.24	0.90	0.83	1.34	1.10	5.41
경북	61	1.28	0.80	0.78	1.23	1.08	5.17
광주	72	1.41	1.16	0.75	1.49	0.87	5.68
대구	76	1.13	0.79	0.60	1.17	0.83	4.52
대전	77	1.38	1.13	0.78	1.30	0.89	5.48
부산	95	1.50	1.22	0.79	1.47	0.82	5.81
서울	247	1.41	1.15	0.76	1.47	1.07	5.85
울산	44	1.37	1.26	1.17	1.64	1.09	6.53
인천	124	1.28	1.06	0.78	1.33	0.83	5.27
전남	54	1.28	0.93	0.92	1.48	1.04	5.65
전북	116	1.27	0.80	0.80	1.17	0.80	4.84
제주	107	1.32	1.10	0.70	1.29	0.74	5.15
충남	74	1.19	0.84	0.55	1.02	0.77	4.37
충북	54	1.30	0.89	0.89	1.54	0.90	5.51
세종	54	1.38	1.15	0.69	1.54	0.91	5.68
합계	1,650	1.32	1.01	0.77	1.35	0.91	5.36

민선5기 4차년의 장애인정책을 발언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제기 및 지적' 발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단순질의' 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거나, 정책적 대안제시가 여전히 낮은 비중인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이다. 민선6기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문제제기' 나 '정책적 대안제시' 가 많아져, 장애인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집행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림4〉 민선5기 4차년도 17개 광역의회 발언성격비율



발언분야통계

광역의회별 분야별 발언수를 살펴보면, 고용분야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근/이동권 268건, 복지일반 262건, 교육 2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별 발언건수는 복지일반이 가장 많았던 예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의원들의 관심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권익옹호’, ‘여성’, ‘자립생활’, ‘정보접근성’ 등의 분야는 발언수가 많지 않았다. 장애인정책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다.

〈표3〉 민선5기 4차년도 광역의회 분야별 발언수

지역	발언 수(건)										
	복지 일반	보건 의료	고용	교육	접근/ 이동권	정보 접근권	권익 옹호	여성	자립 생활	문화 체육	계
강원	6	1	2	20	9	0	2	5	1	4	50
경기	54	27	80	29	45	0	8	10	8	17	278
경남	6	2	10	29	8	2	2	1	1	6	67
경북	16	17	13	2	6	0	0	1	0	6	61
광주	5	12	6	10	16	3	6	4	2	8	72
대구	12	12	1	8	28	1	1	1	0	12	76
대전	10	15	13	9	16	4	2	4	2	2	77
부산	4	8	14	23	16	8	4	10	4	4	95
서울	33	30	38	37	50	6	18	3	2	30	247
울산	7	1	11	5	7	1	1	3	2	6	44
인천	16	10	17	17	15	8	3	6	3	29	124
세종	17	1	12	2	7	1	2	0	4	8	54
전남	10	15	11	6	3	1	8	0	0	0	54
전북	15	18	13	20	9	5	5	4	4	23	116
제주	27	11	15	10	25	0	0	9	5	5	107
충남	13	2	16	6	5	1	7	3	0	21	74
충북	11	3	8	12	3	0	8	4	3	2	54
총계	262	185	280	245	268	41	77	68	41	183	1,650
평균	15.41	10.88	16.47	14.41	15.76	2.41	4.53	4.00	2.41	10.76	97.06

이제 민선5기 지방의회는 마무리되고, 민선6기 지방의회가 맞이 올랐다. 그간의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의원들이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롭게 시작된 의회에서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 자세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의제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조례법률 모니터링사업 결과



김익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1. 법률 모니터링

(1) 선거관련법률 모니터링 - 장애인 참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 조사

[조사대상]

14년도 법률 모니터링은 중앙선관위 소관의 선거관련법 50건으로 선정되었다.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선거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요청한 바 있어 조례법률 모니터링 파트에서 담당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조사결과]

관련법 50건을 전수조사하여 개정대상을 지난 5월 발표하였는데¹⁾ 주요 개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참정권 제한 법률 현황

(2014. 05. 기준)

주제	관련법	문제사유
I.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공직선거법 65조제4항	의무조항이 아님, 점자형과 책자형 면수가 동일하여 점자형공보물 정보량이 제한됨
II.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공직선거법 122조의2제3항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 지원이 없어 장애인의 피선거권이 제한됨
III. 선거방송 수화·자막 제공	공직선거법 70조제6항, 72조제2항, 82조의2제12항	수화·자막 제공이 임의조항이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됨
	국민투표법 30조제1항, 31조제1항	
IV. 거주시설 거소투표	공직선거법 38조	거주시설 부정선거 방지책을 규율해야 함
V. 투표소 접근성·편의제공	공직선거법 6조제2항	편의/접근성 보장이 제한적이거나 명시조항이 없음
	국민투표법 51조제3항	
	주민투표법 제2조제1항	
VI. 선거정보 접근성	주민투표법 제4조제1항	정보접근/편의제공 조항이 없음
VII. 신형기표대 가로폭 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보조인 동반 장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려면 기표소 규격을 규율해야 함
VIII. 성년후견인의 (피)선거권제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6조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용어변경됨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피)선거권이 2018. 6. 30까지 제한됨
※ '장애인' 권리 명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독일 기본법처럼, 국민이 장애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항 신설

[개정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니터링센터 개정제안 3건 수용

위 조사결과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관련 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는데²⁾ 모니터링센터가 제안한 개정제안 중 I, II, VIII 3가지 제안이 수용되었다.

I 에서 다만 점자공보물 의무지원이 모든 선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총선과 대선으로 제한되

1) 김익수,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모니터링 리포트 17호』p.21-2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었는데, 예산 부담때문에 점진적 추진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II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활동보조인) 지원인데, 센터는 5월에 개정안을 발표하기 이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때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자금 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5월 모니터링센터의 개정 제안 이후 기존의 유권해석을 포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자금으로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VIII은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개정제안이다. 민법이 개정(2011. 3. 7.)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에 대한 규정이 피성년후견인에게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그 후에는 금치산자에 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다. 피성년후견인에는 종전의 금치산자와 달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모든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이 제한되었다가 2018년 7월 1일부터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예정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는 ‘금치산자’를 용어삭제하겠다고 개선제안한 것이다.

2. 조례 모니터링

(1) 차별조항 모니터링

[조사결과]

전국 자치법규 장애인차별조항 개정현황

(2014년 10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계
차별(A)	156	121	63	81	58	36	33	209	161	129	102	153	93	127	192	12	1,726
개정(B)	85	69	33	52	38	31	29	188	91	62	57	99	47	88	70	11	1,050
B/A (%)	54	57	52	64	66	86	88	90	57	48	56	65	51	69	36	92	61

[분석]

2010년부터 수행한 자치법규내 장애인 차별조항 모니터링은 올해로 5년을 맞이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244개 지자체 자치법규 102,877건(14년 1월 기준). 14년도 10월 현재 장애인차별조항은 1,726건이고, 개정은 1,050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율은 61%로 전년대비 20% 상향됐다. 5년 평균 개정율은 대략 10% 내외로, 작년에 주춤했다 올해 평균 개정율을 만회했다. 개정을 회복은 임기 만료를 앞둔 의원들이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난 민선5기 때도 임기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제정이 증가한 곳들이 있었다.

(2) 해촉조항 모니터링

[개요 및 분석]

고용 및 각종 위원회 운용 조례에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촉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지자체마다 20-40건 내외로 발견된다. 문제는 6개월 이상 병가를 요하는 질병 외에 해고해촉의 상세기준이 조례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들은 마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가 생기면 무작정 해고해촉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위압감마저 느끼게 한다. 나아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고려하는 조치가 장애친화적이며 인권의 가치에도 부합할텐데 조례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때문에 이 조문들은 조직성원을 언제나 교체 가능한 비인격적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준다. 직무수행능력의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두 손이 절단된 소방관은 화재현장 근무를 할 수 없지만 보장구 지원을 통해 행정업무로 전환될 수는 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된 헌병은 민첩한 행동을 요하는 수사업무는 할 수 없으나 자료조사나 정보분석 등 내근은 가능하다. 근무할 의지가 있는 공무원과 위원들을 손쉽게 해고해촉하는 사례 방지와 사회에 만연한 인력 경시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해촉해고 조항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올해 조사는 8개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조례 30,592건이고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사결과]

8개 광역지자체 자치법규의 무분별한 장애인 해촉해고조항 현황

(2014년 10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조항수	558	118	201	204	190	115	164	6	1,550

(3) 연구주제 발표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차별의 이론적 연원

[개요]

올해 최초로 법률조례 모니터링을 통해 취득된 노하우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법규 영역에서 유의미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연구주제는 이번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모니터링의 후속과제에서 선정했다. 후속과제는 거소투표소 관리 문제와 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이었는데 성년후견인 선거권 제한이 선택되었다.

[수행방식과 결과]

장애인 권리제한 유무의 법적판단 근거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두고, 협약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게재된 상세 원칙을 인용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5, 16조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능력 및 의사표현 기술과 법적 능력과의 무관계성을 밝히고, 위원회가 장애인의 법적 권리 제한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조치사항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권고는 성년후견제 폐지와 대안으로서의 조력사결정제도의 지원이다.

나아가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도개선만을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 장애인 차별의 역사적 연원과 이론적 배경을 탐구, 담론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위하여 철학자 미셸 푸코, 한나 아렌트, 조루조 아감벤의 논의를 차용,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시대에 따라 상이했고, 근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재구성되고, 감금 및 개조의 대상이 되어 정신병원이 탄생하였음을 밝혔다(미셸 푸코). 또 거주 시설 및 정신요양원·병원의 장애인은 인간의 지위를 박탈당했음을 지적했다(한나 아렌트). 그리고 장애인 감금은 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더럽고 불결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을 직시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시설은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조루조 아감벤).

3. 결론

[지난 과정과 전망]

2009년 시작된 법률조례 모니터링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수행하면서 각종 유형의 장애인 차별 조항을 조사 수집하게 되었고, 전국조례제개정운동본부를 결성하여(2011년) 지금까지 지역별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조항의 개정을 선도해 왔다. 또 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조사하여 그 제정추이 현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수조례를 선정, 확산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법률로 대상을 확대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현행법률 4,000여 건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 154건을 조사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특정 소관부서 법률을 선정하여(중앙선관위 소관 법률 50건) 개정대상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가 일부 수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올해는 그간 차별조항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정신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토대로 연구사업을 진행했다(정신적 장애인 차별의 이론적 연원 연구).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의제를 보다 심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또 작년부터 정신장애인들과 연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 협력관계를 구축,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에도 조례법률 모니터링은 조사 데이터 신뢰성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제도·정책개선, 그리고 연관주체에 대한 심화연구, 사업 네트워크 확대라는 다각도의 분야로 전개될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 방향



이강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 이 글은 모니터링리포트 18호 '13년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장애인 복지법에는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라고 나와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제대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1년에 1회 실행하는 지자체, 아예 실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볼 수 있었다.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법률적 구체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 아직 법률적으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라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러한 법률에 보강이 필요하다.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을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매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 보관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자세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1시간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문서로 내용을 보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그러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 가이드가 나와있지 않다.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는 2013년도 예산은 없었지만 2012,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격년제로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편성된 금액을 살펴보면 지자체마다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횟수를 살펴보면 몇 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지자체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육방법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선호하는 몇 가지 방법만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매년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마다 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다보니 단체에서 개발한 한두 가지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몇 년간 반복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주제 역시 기초적인

인권과 장애인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주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기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 초급과 중급, 심화 과정이 있는 주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가이드 부재에 따라 매년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가이드가 제시되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년 1회, 1시간 이상, 범위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실시방법, 횟수, 주제 등과 법률 위반 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법적인 부분에서 몇인 이상의 사업주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연 시행횟수, 법률 위반 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용적인 가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의 강사들도 그렇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기획하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에서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시행 강사도 혼동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 역시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선임자가 시행하는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매년 비슷한 교육을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강사양성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지역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일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인증이 있다면 교육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강사의 후속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강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식개선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장애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같은 장애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사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비율을 4명 정도로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이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진솔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육성도 중요하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 공무원은 대부분 순환직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비중이 더욱 크다. 각 지역의 특색이 있겠지만 중앙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주제와 시행횟수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매년 내려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제에 대한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권교육, 일반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등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다양한 주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주제들이 지역마다 다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 주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주제를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체험,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주제와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러 가지 주제를 돌아가며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면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절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가지가 장애인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장애인의 채용이 늘어난다면 직장 내에서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쓰기책 가장 앞페이지에는 연필 쥐는 방법이 나와 있고, 말하기 책 가장 앞페이지에는 말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인식개선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글 김지선 모니터단원

이번 씨네 영화평을 기획하면서 편집진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다뤘던 다양한 장애인 영화 및 인권관련 영화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을 다루는 영화의 조건이란 무엇인지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이기도 하니, 특정 영화를 소개하지 말고 영화에 대한 생각과 견해 자체를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간 씨네 코너가 26회나 진행되었고 하니 이쯤해서 영화 자체에 대한 고찰(?)도 의미있겠다 본 것이죠.

장애인을 다루는 영화는 어떠해야 하나? 일단 장애인의 삶과 문제를 직시하고 왜곡 없이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편적이고 부수적인 소재 차원에서 활용하는 영화는 제외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영화들은 장애인을 다루는 정도차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살인의 추억’, ‘마더’, ‘언브레이커블’ 등 정도는 다르지만 장애인을 부수적으로 등장시킨 이 영화들은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세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 ‘맨발의 기봉이’, ‘7번방의 기적’ 이 그렇습니다. 작가 노회경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는 주인공이 정신장애인데, 장애인의 고뇌를 잘 보여줬고 타인과의 관계형성 과정을 설득력있게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위해 작가는 많은 장애인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정신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부수적 소재로 등장시키는 영화일 수록 의도치 않은 차별이 될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장애인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신경하게 다룰 가능성이 크니까요. 우리처럼 영화를 보고나서 모니터링하고 평을 쓰는 작업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문제의식이 지나치면 ‘재미’ 라는 영화의 핵

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큐나 인권영화가 외면받는 것은 문제의식만 앞서고 나머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는 것은 특정 대상(장애인)이나 주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품이 주는 감동과 재미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왜 장애인 영화를 만드는가에 대한 제작자의 주제의식이 명확해야 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의 한사람이므로 그들도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론 막연합니다. 계몽영화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장애인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3명이 술안주로 먹으려고 과일깡통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장애 때문에, 깡통 따개가 있었는데도 딸 수가 없었다네요. 3명에서 킁킁대며 깡통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상황이 바로 장애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코믹한 장면으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얘기를 들은 좌중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발가락이나 두 팔등으로 깡통을 잡고 어떻게든 내용물을 먹겠다는 그 모습은, 얼핏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듯 보이나 동시에 장애인의 슬픔을 함축하는 페이스스가 느껴지는 장면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제작자의 역량에 따라 말입니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유나의 거리’의 김운경 작가가 이런 씬을 만드는 데 독보적입니다.

장애인을 다룬다고 너무 진지해도 관객이 외면합니다. 극중 재미를 위해 장애인을 도구적으로만 써도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세심한 통찰력을 발휘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장애인 캐릭터가 녹아들어 가게 하는 것, 그러나 장애인의 표정과 대사 행위 동작 하나 하나에도 섬세한 지문을 대입시켜 인물의 입체성을 살리는 것, 결국 제작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철학이 장애인 영화 제작에서도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너무 뻘한가요?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으니 기존의 과제를 재구성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할 뿐이다” 모니터링센터의 이석구 소장님의 명언이랍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 제 얘기가 설득력 없대구요?

인류생존 가능성의 실험장

『제노사이드(Genoc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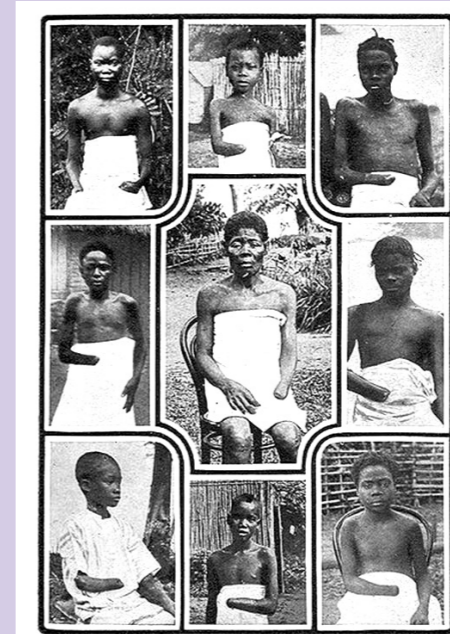
글 김병민 모니터단원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패배로 확인된 집권기 후반, 백악관에 돌연변이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과학계 뉴스가 왜 백악관에? 그 생명체의 종이 다름 아닌 인류라서다. 2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에게 멸망당한 이래, 새로운 진화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지능이 장난 아니란 말씀. 암호통신망 에셜론(Echelon)¹⁾을 놀이터삼아 드나들고, 슈퍼컴퓨터로 수십 년 걸리는 화학구조식을 며칠 만에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것도 3살짜리 유아가. 그래서 이 아이의 암호명이 누스(Nous)²⁾. 만일 아이가 미국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건드리면? 번즈(소설 속의 부시 대통령)는 사색이 된다. 초강대국을 제압하는 놈이(아니 어린애가) 나타났다. 누스를 말살하라. 콩고 피그미족 부락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4명의 용병이 파견된다.

그런데 누스는 미국 정부보다 우월했다. 선발된 용병들은 사실 누스가 자기 보호를 위해 일부러 고른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미국정부가 선발한 것이다. 용병중에 아들이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예거라는 미군 출신이 있다. 누스가 개발한 화합구조식 프로그램은 예거 아들의 난치병 치료를 위해 고안된 것이고 누스는 이 연구를 일본인 협력자에게 맡긴다(작가가 일본인이다). 그런데 번즈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려는 부하를 용병속에 포함시켜 누스가 죽은 후 용병 전원을 제거하려 한다. 누스가 이 사실을 밝히자 분개한 용병들은 오히려 누스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 탈출을 시도한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 누스를 살리기 위해 무장집단이 포진한 콩고를 탈출하게 된 예거 일행의 운명은...

이 책이 단순한 스릴러에 그치지 않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100년 전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가 된 콩고는 폭정에 저항한 현지인들의 손목을 잘라 죽였다. 학살된 사람만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1,000만 명이라고 전해진다.”(본



FROM PHOTOGRAPH, CONGO STATE
“The pictures get sneaked around everywhere.”— Page 40.

벨기에에 저항했다가 손목이 잘린 콩고인들

문 473쪽)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간 이도 1,000만 명 정도, 그 이상의 흑인이 그 와중에 학살당했다. 콩고 이웃의 르완다 사태도 식민지 유산이다. 이 분쟁은 콩고의 자원을 둘러싼 이해다툼으로 번져 주변국들까지 끌어들이는 1차 아프리카 대전으로 발전했는데 10만 명이상이 학살당했다. 이라크 전 희생자의 숫자다. 당시 무장세력은 부락에 들어가 아이가 어머니를 강제 성추행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목을 자르게 한 후 소년병으로 끌고가 살인기계로 키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20세기가 되도록 아프리카만 발전이 뒤쳐진 것은 노예 무역과 가혹한 식민지 지배로 인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본문 473쪽)

번즈가 3살난 유아를 죽이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나와 다른 존재가 마땅치 않고 두려워서다. 작가는 강변한다. “어느 문화권이나 현생인류는 현저하게 용모가 다른 신생아를 살해했다. 인위적인 도태.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없애려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초지성체로 태어난 장애아 누스(두뇌 사이즈와 용모가 현생인류와 다르다. 필자주)를 죽이려는 거라고(본문 471쪽). 너무 우월해서 두렵다고 죽이고, 너무 모자라서 경멸해서 죽인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 같은 종끼리 제노사이드를 행하는 유일한 동물이야. 이것이 사람이라는 생물의 정의야. 인간성이란 잔학성이란 말일세.”(본문 472쪽)

1) 미국·영국이 주도하는 영어 생활권 국가 연합이 운영하는 전 세계 통신을 감청하는 정보감시망(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감시활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편집자주).
2) 그리스어로 '정신', '지성체' 라는 뜻. 소설상에서는 인류의 지성을 초월하는 초지성체로 묘사된다(편집자주)



소셜 배경인 콩코의 소년병 모습

대한민국은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태아의 낙태를 허용해 왔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2009년 개정). 몰상식한 근거로 장애아 살해를 합법화한 거다. 그런데 이 소셜은 아예 잔학성을 인

류생존 가능성으로 승격시켜 버린다. 잔인한 놈이 적응하고 생존해 온 거라고. 만일 이 말이 옳다면, 누스가 핵폭탄 스위치를 눌러도 할 말 없는 거 아닐까? 그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소셜을 보시라. 너무 재밌다.

저서명 『제노사이드』
저자 다카노 가즈야키

출판사 황금가지, 2011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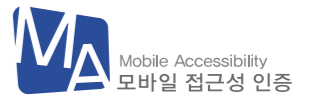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이권희)	T.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3층
부산 (대표:김호상)	T.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김 량)	T.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대전 (대표:안승서)	T.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성현정)	T.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49-7 새한빌딩 5층
경기 (대표:안미선)	T.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박광순)	T.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북 (대표:김미아)	T.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경남 (대표:문숙헌)	T.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제주 (대표:고현수)	T.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